

97. 주 요 업 무 보 고 서

97 . 5

환 경 관 리 과

보 고 순 서

I 일반 현황

II '9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

- 1) 맑은공기 보전대책
- 2) 수질보전 대책
- 3) 소음·진동방지 대책
- 4) 유해화학물질관리 대책
- 5)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

일 반 현 황

0. 직 원 현 황

(정원/현원)

직 렬 직 급	계	행정직	보건직	환경직	화공직
계	19/21	2/2	6/7	7/7	4/4
5급	1/2	1/1		1/1	
6급	3/3	1/1	1/1	1/1	
7급	8/4		2/2	4/1	2/1
8급	5/8		2/1	1/4	2/3
9급	2/4		1/3	1/1	1

0. 과 직제 및 계별분장 사무

환 경 관 리 계	환 경 지 도 계	생 활 공 해 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경개선부담금 · 배출시설 허가 · 환경보전관리 홍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질, 대기오염배출업소 점검 · 소음, 진동배출업소 점검 ·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·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부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동차공해단속 ·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처리 및 점검 · 유독물업소 관리

0. 환 경 현 황

가. 배 출 시 설 현 황

(단위 : 개소)

요 인 구분	계	대 기	수 질	소음·진동	비 고
총 계	529	159	192	178	
허 가	181	68	22	91	
신 고	348	91	170	87	

나. 유해화학 물질 관리업소 현황

(단위 : 개소)

계	보 관 업	취 급	판 매 업	비 고
254	1	10	243	

【 맑은 공기 보전 대책 】

추진 방향

- 청정연료 보급 확대 지속 추진
-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
- 매연 배출업소 지도·단속 강화

가. 아황산가스 저감

1)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

- 대상 : 159 개소
- 추진 계획
 - 대표자 및 관리인 교육 : 년 2 회
 - 지도점검 : 업소별 등급(청, 녹, 황, 적)에 따라 차등 실시(년 1~4회)
 - 점검내역
 - 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
 - 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
 - └ 대기오염도 및 유황함량 검사
 - 점검기간 : 97.1.3 ~ 4.30 (4개월간)
 - 점검실적
 - ┌ 단속건수 - 70건
 - └ 조치내역
 - ┌ 개선명령 : 3건
 - ├ 환경오염도 검사의회 : 33건
 - └ 청정연료 전환 : 1건

3) 우심지역 특별 관리 (문래,도림지역)

- 추진 계획
 - ┌ 주변 환경오염배출업소 순회 단속
 - └ 청정연료(LNG) 전환유도
- 점검실적
 - 월1회 순회 점검(4회 지도점검)
 - 9개업소 전환유도 지시

나. 비산먼지 저감

1) 공사장 지도점검

- 대 상
 - 건축공사 : 연면적 1,000㎡ 이상
 - 굴착공사 : 총연장 200m이상, 토사량 200㎡ 이상
 - 철거공사 : 연건평 3,000㎡ 이상
- 추진 계획
 - 지도 점검
 - 정기점검 : 월 1 회
 - 수시점검 : 민원 발생 및 필요시
 - 관계자 교육 : 년 1 회
- 추진 실적
 - 지도점검 : 공사장 157개소 지도점검
 - 행정처분 : 개선명령 6개소, 과태료 1개소(50만원)
 - 관계자 교육 : '97.6.11(수) 교육실시 예정

다. 악취 발생

1) 다량 악취 배출업소 중점관리

- 대 상 : 식품, 섬유 등 대형공장 8 개소
- 추진 계획
 - 지도점검 : 년 2회 실시
- 추진실적
 - 지도점검 : 10개소(조치사항 없음)

2)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관리

- 대 상 : 52 개소 (인쇄, 출판사, 적환장등)
- 추진계획
 - 민원발생시 또는 우려업소에 대해 수시점검
- 추진실적
 - 점검실적 : 8개소
 - 조치사항 : 시정지시 8개소

라.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

□ 자율적인 배출가스 저감 유도

-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구민 홍보 강화
 - 방법 : 반상회보, 공한문, 안내문 발송
 - 내용
 - ┌ 배출가스저감을 위한 차량 관리방법
 - └ 위반시 조치내용 및 배출가스 무료측정 안내
-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측정
 - 다수 차량보유업체에 대한 순회점검
 - 대상 : 자동차 10대 이상 보유업체
 - 매주 화요일 영등포구 주차장(구영등포공고)에서 실시
- 무료점검실적
 - ┌ 단속 : 101대 측정하여 6대 초과 (초과차량 - 개선지시)
 - └ 홍보 : 지방신문에 1회 홍보

□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

○ 대 상 : 휘발유, 경유, L.P.G.사용차량

○ 목 표 : 30,000 대

○ 단 속 방 법 : 매연, 일산화탄소, 탄화수소

○ 방 법

┌	관내 통과차량 거점 단속
	다수차량 보유업체 차고지 순회단속
	매연 발생 차량 신고제 실시

○ 단속실적

┌ 단속횟수 : 28회

┌ 단속대수 : 2,243대

┌ 행정처분 : 개선명령 - 93대, 과태료 - 68대

과태료 68대 (1,090만원)

【 수 질 보 전 대 책 】

추진방향

- 폐수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
- 하천 오염 방지 및 순찰 강화
- 시민 홍보 강화

가.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

○ 대상

계	세차	도금	금속	인쇄	운수	정비	병원	화학	섬유	식품	기타
192	58	53	18	16	9	9	12	3	1	7	

○ 추진 계획

- 관리인 교육 : 년 2 회

- 지도 점검

- 허가업소
 - 정색업소 : 166 개소 (년 1 회)
 - 녹색업소 : 28 개소 (년 1 회)
 - 황색업소 : 7 개소 (년 2 회)
 - 적색업소 : 4 개소 (년 3 회)
- 신고업소 : 년 1 회

- 점검 내역

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
-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 여부
- 폐수 무단방류 여부
- 기타 환경오염 행위

- 점검 기간 : '97.1.3 ~ 97.4.30(4개월간)

- 점검 실적

- 점검건수 : 236건
- 위반건수 : 15건
- 조치내역
 - 고발 - 5건
 - 폐쇄명령 - 1건
 - 경고 - 10건

※ 폐수자가처리업소 처리수 환경오염도 검사 의뢰 - 23건

나. 하천 수질오염사고 방지

- 대 상 : 안양천, 도림천
- 추 진 계 획
 - 하천감시 강화
 - 순찰반 편성 운영
 - 운 영 : 주 1 회 순회순찰
 - 감시내용 [미처리 폐수 및 특정 폐기물 유입 여부
기타 환경오염 행위
 - 수질오염 사고시 방재체계 확립
 -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 : 생활환경과와 합동
 - 인근 구청과의 협조체계 구축
- 추 진 실 적
 - 하천감시 16회 순찰
 - 순찰결과 특이사항 없었음

【 소 음 . 진 동 방 지 대 책 】

추진방향

- 소 음 발 생 사 업 장 관 리 강 화
- 생 활 소 음 발 생 원 지 도 계 몽

가. 소음·진동 배출업소 지도 점검

- 대 상 : 170 개소
- 추진계획
 - 관리인 교육 : 년 2 회
 - 지도 점검 : 년1회 (민원 발생시 : 수시점검)
 - 점검내역
 - 방지시설 적정여부
 - 자가측정 이행여부
 - 배출시설 변경여부

나. 생활소음 발생원 지도계몽

- 대 상
 -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사업장
 - 확성기 소음, 공사장 소음등
- 추진실적
 - 공한문 발송 : '97.4.12 발송
 - 지도점검 (민원발생시) : 12건
 - 행정처분 : 개선명령 1건, 경고 1건, 과태료 1건
- 점검내용 : 민원발생시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여부 확인

【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책 】

추진방향

-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예방
- 유독물 판매업소 관리 강화

가. 유독물 판매업소 점검

- 대상 : 254 개소
- 추진계획 : 대표자 및 관리인 교육 : 년 1회
 - 지도점검
 - 정기 : 년 2회
 - 수시 : 민원 발생 및 필요시
 - 점검내역
 - 등록사항의 일치여부
 - 유독물 관리 및 취급상태
 - 유독물 관리자 준수사항등

나. 추진실적

- 대표자 및 관리인 교육 : '97.6.11 수요일 (예정)
- 지도점검실적 : 취급업- 5개소, 판매업 - 70개소
- 조치사항 (행정처분)
 - 등록취소 : 4건
 - 경고 : 6건
 - 고발 : 1건
 - 개선명령 : 3건

다. 유독물사고시 비상조치

- 유독물의 누출, 화재, 폭로, 접촉사고시 응급조치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
- 조치 : 유독물 사고대책 상황실 설치운영
 - 주간 : 환경관리과
 - 야간 : 구청 당직실

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】

추진방향

-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
-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개선의 투자자원 합리적 조달

가. 부과대상

- 건물 : 소비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물
 - 연면적 160㎡ 이상 건물

단, 공장 창고 주차장등 제외. 주택 면제. 공공용 50%경감('97. 2기분까지).
- 자동차 : 비사업용 경유 자동차

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: 97/1기분부터 부과, 기준부과액 : 8,100원

다. 97/1기분 과징현황 ('97.3.31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 획		1기분 부과현황		1기분 징수현황	
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
계	63,243	4,822	33,325	2,782	22,444	2,180
시설물분	9,014	2,912	4,579	1,720	3,520	1,469
자동차분	54,229	1,910	28,746	1,062	18,924	711

나. 부과 기간 및 납기

○ 부과 기준일

반기별	부과 기준일	부과 기간	납 기
1기분	매년 12월 31일	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	다음년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
2기분	매년 6월 30일	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	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